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국 가 인 공 지 능 위 원 회 의 설 치 및 운 영 에 관 한 규 정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1)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둠.
- 2)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인공지능 관련 투자 및 자원 배분 전략 수립과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1)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함.

2)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안 제8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9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

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관련 투자 및 자원 배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2 - 6124